# 안전보건관리 유의서

## 1. 적용대상

본 문서는 공고번호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제2023-1호 입찰건명 「[수의계약공고] 한림대의료원(강남성심병원) 본관2동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 보수업체(AS 상주) 선정」에 적용한다.

# 2. 적격 수급업체 평가 및 선정

### 가. 실시근거

- 1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61조(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)
- 2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1조(도급인이 지배·관리하는 장소)
- 3)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)

## 나. 제출방법

- 1) 제출기한 : `23.04.18(화) ~ `23.04.24(월) (마감당일 14:00까지 도착분)
- 2) 접 수 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전기실(이동건 기사장) (본관2동 지하1층 전기실)

## 다. 제출서류

- 1)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.
- ※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적격 수급업체 선정 기준 참고
- 2)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.(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출력)

# 3. 산업재해 예방활동

### 가. 도급공사 안전관리

- 1) 담당자는 수급업체에 도급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 성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2)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의 도급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한다. 또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 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하거나, 용도외 사용한 내역은 정산하여 감할 수 있다.
- 3) 위험 기계·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본원 담 당자에게 통보하고,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- 4)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"사전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" 대상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업체 에 사전조사 결과 및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, 내 용이 적합한지 확인 및 현장점검 시 확인할 수 있다.
- 5)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관련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지도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.

## 나. 안전보건협의체

- 1) 안전보건협의체는 총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및 상주 수급인에 대해 구성·운영하며, 공사기간이 30일 미 만인 건설공사인 경우에도 위험성을 고려하여 소관 수급인과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2)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해야 한다.

- 3)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안전보건총괄책임자(병원장)가 회의 의 소집권자가 된다.
- 4) 안전보건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.
 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
  - 수급인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
  -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
- 그 밖의 수급인 근로자 전체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 다. 안전보건점검
  - 1) 2일 1회 병원은 안전보건순회점검을 실시한다.
  - 2) 분기 1회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수급사의 현장관리자 및 직원 1명을 반드시 참석 시킨다.
  - 3) 수급시는 발주처의 안전점검을 거부, 방해, 기피해서는 안되며,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는 시정 하여야 한다.
  - 4) 본원 안전관리자는 발주공사 단계별(발주·계약, 착공 전, 공 사 중) 안전관리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## 라. 안전보건교육

- 1) 공사 기간 중 매월 2시간 이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교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2)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건설 근로자의 경우 최초 작업 전 8시간 이상의 채용시교육을 진행하고, 1개월 미만으로 작업하는 건설 근로자의 경우 주 단위로 1시간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. 단,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외할수 있다.
- 3)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해야 한다.

# 4. 일반작업 유의사항

### 가. 작업장 내에서 행동

- 1) 바닥에 위험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흘리지 않는다.
- 2) 공구 등 기타 물품을 던지고 받는 행위를 급한다.
- 3) 각종 표지판과 안전지침서를 숙지하고, 준수한다.
- 4) 공사 종료 시 까지 청소원을 상시 배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한다.
- 5) 인화성, 발화성, 폭발성 기타 위험물질이나 유독물질은 용기에 내용물을 표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
- 6) 소화기, 소화전, 출입구, 비상구 및 분배전반 위치 부근에는 물품을 두지 말아야 하며, 벽이나 창문, 기둥 등에 물품을 기대어 세워 두어서는 아니 된다.

### 나. 통로 및 통행

- 1) 통로 바닥은 평탄하여야 한다.
- 2) 통로 상에는 구멍, 하수구의 뚜껑, 맨홀, 볼트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돌출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.
- 3) 건물의 계단, 경사로 등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.
- 4) 통로 상에는 어떤 것도 놓는 것을 금지한다.
- 5) 지정된 장소로만 통행하여야 한다.
- 6) 크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으며, 특히 사다리 이동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이동한다.
- 7) 운반대차 등 기타 운반구를 타는 행동을 금지한다.
- 8) 가동 중인 기계 하부나 제품 및 적재된 롤 사이 또는 운반중 인 크레인 밑을 통행하지 말 것

### 다. 낙하물 등의 예방

1) 작업장의 바닥, 통로, 도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망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### 라. 복장 및 보호구 착용

- 1) 소매단추 및 앞 단추는 잠그고, 옷자락을 늘어뜨리지 않는다.
- 2) 복장은 항상 청결하고 훼손된 곳은 보수하여 착용한다.
- 3) 날,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때에는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 이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4) 위험작업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화와 안전모를 착용한다.
- 5) 미분, 칩, 기타 비산물이 발생하는 절단, 연삭, 기계가공 등의 작업에는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.
- 6) 화공약품 취급 작업 시에는 보안경, 내산장갑, 앞치마 등을 착용한다.
- 7) 인체에 해로운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흄 또는 분진 발생장소에 는 방독이나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.
- 8) 85(dB)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는 귀마개 또는 귀 덮개를 착용해야 한다.
- 9) 칩, 증기, 유해물질 등의 비산으로 얼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수행 시에는 보안면 등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.

## 라. 안전보건게시물 관리

- 1) 작업장소 내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해야 한다.
- 2) 위험장소에는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표지를 게시해야 한다.

# 5. 전기작업 유의사항

## 가.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

- 1) 면허를 필요로 하는 전기작업은 면허소지자 외에 작업을 금한다.
- 2) 전기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본원 담당자에게 보고한다.
- 3) 전기장치에 스파크나 연기가 나면 전기를 끄고 보고한다.
- 4) 전선 또는 전기 기구에 물건을 걸어두지 않는다.
- 5) 활선작업 시에는 감독자를 배치하고, 2인 이상이 작업한다.
- 6)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 부근이나 그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전기기기에 안전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7) 원내 차단기나 안전 스위치를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.
- 8)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전원을 차단하여 둔다.

## 나. 전기작업에 관한 사항

- 1) 모든 전기작업 시에는 전격(감전)에 대한 보호구, 접지 등 감전사고예방 방호조치가 확보되도록 한다.
- 2) 활선작업 시 또는 정전작업 중 타인이 전원 스위치를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위치에는 '조작금지'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한다.
- 3) 임시배선은 가급적 지양하고, 부득이하게 연결 시에는 연결 부를 절연 테이프로 감아둘 것
- 4) 전기 기구류는 전원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.
- 5) 비오는 날에는 옥외에서 전기작업을 하지 않는다.
- 6) 정전작업 시에는 전로의 개로 개폐기에 시건장치 및 통전금 지 표지판을 설치한다.
- 7) 정전작업 시에는 단락 접지기구를 사용하여 단락 접지한다.

# 6. 기계안전 유의사항

## 가. 기계작업에 관한 사항

- 1) 본인담당 이외의 기계는 손을 대지 않는다.
- 2) 기계의 가동은 각 작업자의 위치와 안전장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가동한다.
- 3) 정전이 되면 우선 스위치를 내린다.
- 4) 작동하는 기계는 정비작업을 하지 않는다.
- 5) 가동 중인 기계는 점검 및 청소하지 않는다. 정지 시에도 청소는 브러시나 기타 치구를 사용한다.
- 6) 기계기구 등의 수리, 정비 등의 작업 시에는 수리 혹은 정비 중 등의 표지판을 기계 조작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7) 회전체에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.
- 8) 비회전체에 가공물을 물려 작업하는 데에는 면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.
- 9) 비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기계의 부속기구 등을 정해진 위 치에 둔다.

## 나. 공구사용에 관한 사항

- 1) 공구를 전달할 때 던지거나 밀지 않는다.
- 2) 사용 후 반드시 보관함에 넣어 둔다.
- 3) 끝이 예리한 수공구는 반드시 덮개나 칼집에 넣어서 보관 이동한다.
- 4) 파편이 튈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을 착용한다.
- 5) 각 수공구는 일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.
- 6) 올바른 공구를 사용하고, 임시적인 공구는 사용하지 않는다.

## 다.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사항

- 1) 운반할 물건의 크기와 무게를 살펴보고 형상에 따라 안전한 작업방법을 택한다.
- 2) 작업할 때는 규정에 맞는 작업복 및 보호구를 몸에 밀착되게 착용한다.
- 3) 운반중량은 조건, 화물의 형상, 성별, 연령 등 조건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한다.
- 4) 중량물을 잡는 방법 및 자세와 순서를 충분히 훈련하여 몸에 배도록 한다.
- 5) 혼자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 2인 이상이나 운반보조기구를 활용한다.
- 6) 여러 명이 운반할 경우에는 작업환경에 적정한 신호방법을 지정 및 준수한다.

# 7. 유해위험물질 유의사항

### 가. 유해물질 유의사항

- 1) 유해물질은 정해진 장소와 용기에 격납하여야 한다.
- 2) 유해물질은 지정된 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3) 관계자 이외 취급 작업장 출입을 금한다.
- 4) 작업장 내에서는 금연 금식을 한다.

## 나. 위험물질 저장소 유의사항

- 1) 저장소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 취급을 엄금한다.
- 2) 취급시 용기의 전도·전락, 충격을 피한다.
- 3)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- 4) 허가량 이상 저장하지 않는다.

### 다. 위험물질 취급 시 유의사항

- 1) MSDS를 구비하여 위험물품을 처리, 운송, 사용하는 근거가 되도록 한다.
- 2) 보호구를 준비한다.
- 3) 원내에서 폐기처분하지 않는다.
- 4) 국부 지역에 누출 시 경고 표지와 지역 내 출입금지 조치하며 신속히 본원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5) 광역 지역에 누출 시 신속히 본원 담당자에게 전화연락 하여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는다.
- 6) 위험정도가 경미하면 보호구 착용 후 비상조치 한다.

# 8. 화재예방 유의사항

- 1) 금연구역 내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.
- 2) 가연성 쓰레기 등은 금속용기에 모아 버려야 하며, 보관 시 뚜껑을 덮을 것
- 3) 소화기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, 사용 시에는 보충한다.
- 4) 소방호스와 소화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- 5) 화기사용 후에는 반드시 소화상태를 확인한다.
- 6) 하수구에는 절대로 유류를 버리지 않는다.
- 7) 페인트 작업시에는 특히 화기에 주의해야 한다.
- 8) 사무실 등에 자리를 비울 때에는 전원을 끈다.
- 9) 승인되지 않은 전열기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 시 본원 전기실 승인신청서를 제출 한 후 반입하여 사용한다.
- 10) 화기를 취급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허가를 득한 후 진행 하여야 한다.